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‘수익사업 승인서’와 ‘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’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,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 모두”를 “사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6항 중 “별지 제5호의3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”으로, “승인 유효기간 연장서”를 “승인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제4조제3항”을 “제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4호의2서식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익사업 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
신청내용	사업명(업종)	
	사업장 소재지	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계획서 1부 - 사업장 소재지,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-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-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-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-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-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기안·결재	→	승인 통보
신청인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

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	
신청인	단체명	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		전화번호		
	소재지					
신청내용	종전 수익사업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	수익사업 승인서		
				발급일자 발급번호		
	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	사업장 소재지				
		변경 내용				
		변경 사유				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 변경계획서(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-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-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-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-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(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-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(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기안·결재	➔	승인 통보
신청인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		국가보훈부

수익사업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
신고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수익사업 승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
변경사항	①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②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 ③ []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④ []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(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변경내용	변경예정일	
	변경 내용	
	변경 사유	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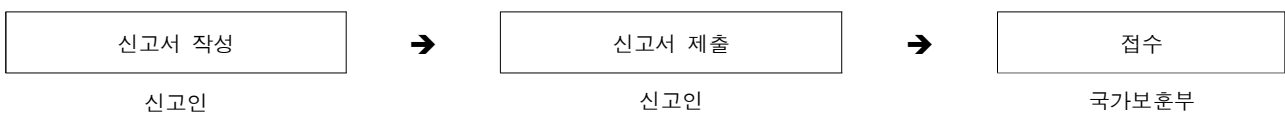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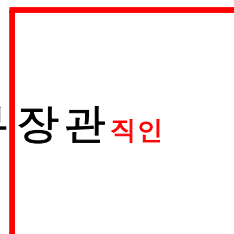
수익사업 승인서

1. 단 체 명:
2. 대 표 자:
3. 주 소:
4. 승인내용:
5.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:
6. 유효기간: ~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·제18조의2 및 같은
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·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
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

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	
신청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신청내용	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	수익사업명(업종 및 품목)	수익사업 승인서	
			발급일자	발급번호
		사업장 소재지		
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	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		
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				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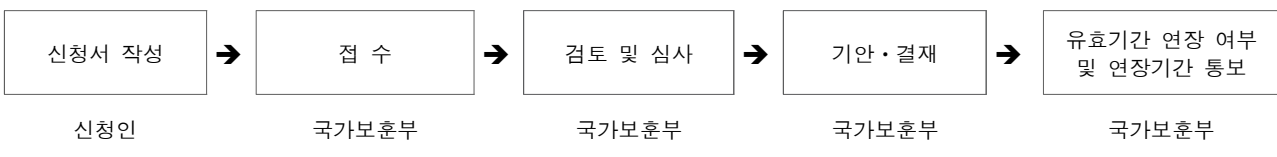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.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그 밖에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) 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법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<u>사항</u>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2조(수익사업의 승인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항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~ ⑤ (생략)	제4조의2(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해야 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<u>별지 제5호의3 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</u> 를 발급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5호서식</u> ----- <u>승인서</u> ----- -----.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	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

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
분 관련 보고 의무, 제4조제3항
에 따른 변경신고사항, 제10조
의2에 따른 실태조사, 제11조제
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
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
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
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
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
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
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
다.

제2조 제2항-